2021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2021년도 △■▽, ●★◎, ○★◇ 종합감사 -

2021.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2

4. 감사실시 과정 ····· 2

5. 감사 중점사항 ····· 4

Ⅱ. 감사결과 ····· 5

1. 총평 ····· 5

2. 지적사항 총괄 ····· 5

3. 지적사항 요약 ····· 5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8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9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10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동법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 제4조(감사의종류)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함)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에 따라 상임감사는 2021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21년도 ◎◍□, ▨▷●, ◕◓▲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평가관리원 ◎◍□, ▨▷●, ◕◓▲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업무상 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수행의 가치 증대 및 기관 고유목적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은 평가관리원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 소속 9개 사업부서, ▨▷● 소속 10개 사업부서 및 ◕◓▲ 이며 2019.6월부터 2021.9월까지 수행한 ◎◍□, ▨▷●, ◕◓ 업무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중복감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사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종합감사는 2021.10.5.일부터 10.9.일까지 예비조사기간 동안 서면자료 조사·분석 및 추가 착안사항 발굴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에서 발굴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반장 1명, 감사인 3명을 투입하여 2021.10.18.일부터 10.22일까지 5일(근무일수 기준)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복재단 감사실과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준감사인을 실지감사에 투입하였다. 감사결과는 내·외부 감사인 검토과정을 거쳐, 2021. 12. 08.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서는 평가관리원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취하였다.

가. 예비조사

효율적인 실지감사 수행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2021.10.5.일부터 10.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감사인 별로 제척·회피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중점 감사사항의 실지감사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감사대상자와 관련 감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실지감사

착안사항 발굴 회의와 예비조사를 거쳐 2021.10.18.일부터 10.22.일까지 5일간 중점 감사사항에 기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지감사 중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처분요구사항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마감회의(강평) 실시

실지감사 종료 후에는 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실지감사 마감회의(강평)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주요 문제점, 개별적인 지적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무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감사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마. 윤리자가진단 및 제3자 검증 시행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인의 윤리자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제3자)이 피감인에게 접촉하여 감사활동 중 감사인의 비위행위 등 윤리준수 적절성을 검토 후 제3자 검증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객관성 및 윤리기준을 강화코자 노력하였다.

바. 감사실무위원회 및 감사심의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감사반 전원이 참석하여 감사처분요구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사. 심리 및 감사심의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임감사인의 점검과 함께 심리실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요구(안)에 대한 내·외부감사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5. 감사 중점사항

이번 종합감사는 평가관리원의 기획·평가·관리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컨설팅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부통제 위험요소에 기반하여 [표1]과 같이 사전조사에서 검토한 중점 감사사항에 집중하여 효율적, 전략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1] 종합감사 중점 감사사항

연번	중점 감사사항	감사 담당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반영한 산업기술 R&D규정 개정	▷◕▲ ■★◓ (교차감사)
2	RCMS 이상상태 조치업무수행 적정성	★◎○ ▽□◕ (준감사인)
3	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적정성	▧▲◎
4	계약관리 적정성 재고를 위한 계약규칙 개선	△◎◕

Ⅱ. 감사결과

1. 총평

산업기술혁신R&D 기획·평가·관리 업무 및 계약관리 등 행정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7	-	-	-	-	-	-	-	-	-	1 (12)	2	2	1	-	1	-

3. 지적사항 요약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반영한 산업기술 R&D규정 개정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규정의 제·개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1. 1. 1.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있어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R&D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통보1)

2) RCMS 집행분석 '조사'등급 후속조치 개선

평가관리원은 RCMS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지원된 연구개발비 사용의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이를 과제 담당자에게 알려 14일 내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총 1,694건의 '조사'등급의 알람 중 177건(10.4%)이 기한 내 조치되지 않아 처리기한 등의 명확한 안내와 미조치에 대한 소명 등이 가능하도록 RCMS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권고1, 개선1) 또한 이를 총괄 관리·감독할 부서를 정하여 업무를 분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권고1)

3) 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부적정

임직원은 주요 업무를 수행함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검하고 심사하기 위해 감사부서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평가관리원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에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누락한 14건의 결재문서가 발견되어 해당 직원 12명에 대해 주의조치가 필요하다.(주의 12명)

4) 계약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규칙 개선

계약원인행위 부서는 계약규칙에 따라 계약의 원인행위, 예산통제, 계약이행 및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의 변경과 용역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10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약변경과 관련한 계약규칙의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개선1)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건의 계약에 대하여 조속한 검사 및 대금지급을 실시하도록 현지조치하였다.(현지조치1)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순번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1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반영한 산업기술R&D규정 개정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규정 개정	통보	2021.12.	2022.2 (2개월)	◇●★
2	ㅇRCMS 집행분석 '조사'등급 후속조치 개선	ㅇRCMS 집행분석결과 '조사'등급 처리기한 안내 및 미조치에 대한 소명 등 시스템 개선과 RCMS 집행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분장관련 직제규정 등 개정	개선, 권고	2021.12.	2022.2 (2개월)	◕◇△, ▧▽○
3	ㅇ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부적정	ㅇ일상감사 절차 누락직원에 대해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 위반방지를 위하여 주의촉구	주의	2021.12.	즉시	○●★, ▷◓◇, ▧◎◕, ■△★, ◍○▧, ◕■★, ▧◍◕
4	ㅇ계약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규칙 등 개선	ㅇ부문계약관리부서의 적정한 계약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규칙 개정	개선	2021.12.	2022.2 (2개월)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순번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리부서
1	ㅇ계약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규칙 개선	ㅇ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 ◍◓▧, ●◕◎에 조속한 검사 및 대금지급 요청하도록 현지조치	현지시정	◎◍■, ▽◓◘, ▷◕◍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교차감사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	2021.12.	회신 기한일	2022.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제　　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반영한 산업기술 R&D규정 개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현황

평가관리원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리업무 총괄 및 규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반영한 산업기술 R&D규정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이하 '공통운영요령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이라 한다)」[1] 제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R&D혁신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R&D혁신법이 2021. 1. 1부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운영요령 등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용어의 정의는 물론 평가관리기준 및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수행자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용어 및 평가관리 기준·절차가 상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R&D 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비교

구 분	R&D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용어	연구개발과제	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1)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2021.1.1. 시행

구 분	R&D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연구/공동연구 책임자	총괄/참여기관 책임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획·예고	과제기획시 보안과제 여부 의무 검토	과제접수 후 평가단계등 검토
공모 (감점 사항)	2개 항목(참여제한, 수행포기) 외 적용 불가	3개 항목 외(참여제한, 수행포기,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공고시 별도 정할 수 있음
평가절차	평가결과를 부처 확정 이후 연구자에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결과확정→결과통보→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협약)	평가결과를 연구자에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이후 부처 확정 (결과통보→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확정→협약)
협약	연차·단계 협약 폐지, 표준 협약서식 마련	연차·단계 협약, 자체 협약서식
중간평가	단계 평가·정산	연차 평가·정산
연구윤리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연구윤리, 부정행위방지, 이해충돌방지,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등)	연구윤리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 중심
제재처분 (참여제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 제외) 참여 제한	신규과제 참여 제한(단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이 제외여부 검토)

한편, ◎◍■◓에서는 공통운영요령 등의 제·개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R&D혁신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R&D혁신법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공고 및 안내 등을 통해 R&D혁신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표준 서식, 참여제한 기준,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은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R&D혁신법 시행에 따른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제·개정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	감사자	▽▨▥, ◎★◘ (준감사인)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	2021.12.	회신 기한일	2022.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개 선·권 고

제　　목 RCMS 집행분석 '조사'등급 후속조치 개선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에서는 RCMS[2]를 통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①기업신용정보, ②자금집행패턴 등을 종합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평가관리 해당과제 담당자(이하 '과제담당자'라

2)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고('14.8.),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등을 RCMS와 연계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요소를 검증하는 연구비 집행분석업무를 '15년 9월부터 구현하여 시행

한다)에게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제 담당자는 알람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실태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2. RCMS 집행분석 '조사'등급 후속조치 개선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평가관리원에서는 RCMS 집행분석 관련 업무를 RCMS 연구비 집행분석 업무 매뉴얼('15.9., 산업부)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관리원 □◁▣에서는 RCMS 연구비 집행분석을 통하여 '정상', '관찰', '주의', '요주의', '조사' 등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조사'등급의 경우 과제 담당자는 ▣◓◘에서 매주 제공하는 안내메일(RCMS Weekly Report) 또는 RCMS 접속 시 알람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있다. 이 때 과제 담당자는 조사등급 알람발생 14일[3] 이내에 RCMS를 통하여 조치내용[4] 등을 작성하고, 조치기한 이후에는 추가의견 작성기능을 통해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금번 종합감사 실지감사 기간 동안 RCMS 집행분석 결과 중 '조사'등급 알람발생 시 해당과제 담당자의 처리기한(14일) 내 조치여부(준수율)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1,694건의 조사등급에 대하여

3) 조치기한(14일)은 '16년7월 RCMS집행분석시스템 기능개선과정에서 정하여 시행된 이후 RCMS 연구비 집행 분석 업무 매뉴얼 등에서 일관되게 안내되고 실제 14일 경과 방지를 위한 개별 안내 등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아니함.

4) RCMS 알람에 따른 과제 담당자 조치방법 : 알람이 발생한 수행기관의 분석보고서를 조회하여 조치내용(정상, 실태조사에서 확인 필요, 집행중단, 특별평가 개최 예정(문제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관리이력 기록을 의무화

177건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2] 조사등급 알람 발생과제의 처리기한 내 조치율

구분		'18	'19	'20	'21.10.	계
총 발생		502	487	163	542	1,694
조치	14일 이내	461	408	144	472	1,485
	14일 미도래	-	-	-	32	32
	14일 초과	41	79	19	38	177
	미준수율(%)	8.2	16.2	11.7	12.9	10.4*

* '18년 ~ ' 21년까지 14일을 초과하여 조치한 177건은 현재 조치가 완료됨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는 관련 시스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사'등급의 알람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10.4%의 처리기한내 미조치율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RCMS 집행분석 결과 조사등급이 기한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제 담당자와 해당부서 팀장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이상상태 조치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RCMS 집행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이행여부의 관리·감독 업무를 적정한 부서에 분장하여 실행토록 함으로써 상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여 조사등급에 대한

기한내 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RCMS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직무분장 및 직제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안내메일(RCMS Weekly Report)에 RCMS 집행분석결과 조사등급에 대한 처리기한과 과정을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은** 처리기한 내 미조치 시 해당 과제 담당자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명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RCMS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은** RCMS 집행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이행여부의 관리·감독 업무를 적정한 부서에 분장하고,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 ◐◰◴◷(◧◇▧,▨◈◷), ◈◉◍(◉◆▦), ▧▩◉(▩○◍)	처분요구일	2021. 12.	회신 기한일	즉시

주 의

제　　목　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부적정

소 관 부 서　①◘◯◡(◫◩◷, ◳◓△▣, ▤◂◆)

②◐◰◴◷(◧◇▧,▨◈◷)

③◈◉◍(◉◆▦)

④▧▩◉(▩○◍)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 임직원은 주요업무를 수행함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고, 평가관리원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에서는 단위업무별로 전결권자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회부 전에 대상서류 사본

을 제출받아 사전검토 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지침」에 따라 적기에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에게 당해서류의 내용과 긴급한 사정 등을 설명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일상감사 처리절차 준수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있어 그 업무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관리원 「일상감사지침」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일상감사에 대한 원칙, 범위,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일상감사의 실시)에서는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종합감사의 예비조사기간 동안, 2020.7.1.일부터 2021.9.30.까지(전략기획단은 2020.11.1.일부터 2021.9.30.까지) 기안된 문서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누락한 건을 점검하였다.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에 따라 경영목표의 수립, 계약방침의 결정 및 변경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일상감사 대상 중 12명이 기안한 14건의 결재문서에서 일상

감사요청 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일상감사 절차를 누락한 관련자에 대하여 향후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주의**)

[관련자]

연번	직위	성명	기안부서	현재부서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일련번호	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	2021.12	회신 기한일	2022.2(통보일로부터 2개월)

현지시정·개 선

제　　목　계약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규칙 개선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계약규칙」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장을 계약관리자로, 실무자를 계약담당자로 하고, 계약원인행위 부서장 및 계정책임자를 부문계약관리자로, 실무자를 부문계약담당자로 지정하고, 계약관리자는 계약전반에 대하여, 부문계약관리자는 계약원인행위, 예산통제, 계약이행 및 감독, 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2. 계약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규칙 개선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평가관리원은「계약규칙」제60조(검사)에 따라 용역을 완성한 계약수행자가 서면으로 결과를 부문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면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1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있으며 합의에 의한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 등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관리원의「계약규칙」제68조(계약변경)은 부문계약관리자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의 중요한 변경 및 증감,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종합감사 예비감사기간 동안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부문계약관리부서의 계약관리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계약만료일을 포함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변경을 요청한 계약 7건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검사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계약 3건 등이 발견되었다.

평가관리원 계약규칙 제68조(계약의 변경)은 부문계약관리자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변경가능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음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등 적정한 계약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5]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필요부분의 이행 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예규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6]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의 가능기한을 명시하는 등 적정한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평가관리원 「계약규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자 소명 등 사유를 확인한 결과 부문계약관리부서의 업무추가 및 타 업무수행에 따른 검수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속히 검사 및 대금지급을 마무리 하도록 현지조치 하였다.

---

5)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관계부서 의견

◷◧◈◷은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약수행기간 내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의 변경이 실시되도록 계약규칙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계약기간 내 기간연장 등 적정한 계약변경이 실시되도록 계약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현지조치 사항

계약기간 종료 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원인행위 부서인 ◰◴▨(◇▧◐), ▩○◰(◴▨◇), ▩○◰ (◴▨◇)에 대하여 조속히 검사 및 대금지급 요청을 하도록 현지조치 하였다. (**현지시정**)

[표1] 기간 종료 이후 검사 및 잔금미지급 용역 현지시정 현황

연번	용역명	부서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첨단업종) 개정	◰◴▨
2	특허정보를 이용한 핵심테마 발굴 모형 개발	◇▧◐
3	업무지원직 수행직무 발굴 및 운영방안	◉▩○